참고

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전면 개편 주요 Q&A

[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]

- 01
-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?
- 올해부터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*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)을 초과하거나, '23.12.31,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 - * (5개 소득) 간이 ^①근로·^②사업·^③기타소득, ^④양도소득, ^⑤퇴직소득
- 02
- **'24년 상반기**(1~6월) 소득금액이 100만원(총급여액 500만원)을 초과 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?
- **간소화 서비스 화면**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**조회** 가능하고,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3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는?

○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, **과다공제**로 인한 **실수**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.

[소득기준 초과 판정 기준]

- Q4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?
- **아닙니다. '24년 상반기**(1~6월)에 발생한 **소득으로만 판단**하며,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.
- Q5 '24년 상반기(1~6월)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소득기준 초과(Y) 판정 근거는?
- 타 소득이 없고 **근로소득만 있는 경우**, **총급여액**이 **500만원**을 초과 하면 Y입니다.
- Q6 '24년 상반기(1~6월)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,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(Y) 판정 근거는?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- 다만, 그 외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Y입니다.

- ① 근로소득 = 총급여액 (총급여액 × 근로소득공제)
- ② 사업소득 = 지급액 (지급액 x 업종별 단순경비율[타가])
- ③ 기타소득 = 지급액 (지급액 × 의제필요경비율)
- ④ 양도소득 = 양도소득금액(음수는 0으로 봄) *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
- ⑤ 퇴직소득 = 과세대상 퇴직급여

- Q7 양도소득금액 판단 시 활용한 양도자산의 종류는?
- 부동산·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 기준이며, 양도차익·차손이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**주식**은 **제외**합니다.
- Q8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?
-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, **지급명세서**가 **수정 제출** 되거나 **종합소득세**를 **신고**하면 **소득금액**이 **변경**될 수 있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.
- Q9 소득산정 기간을 상반기가 아닌 더 뒤로 연장할 수는 없는지? (예시:1~10월)
- **지급명세서 수정** 및 **자료구축 일정** 등의 제약으로 올해는 6.30.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하였으며, **점차 기간을 연장**할 계획입니다.

[소득기준 초과 여부 민원 대용]

Q10 소득기준 초과(Y)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 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?

- **아닙니다**.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, 부양가족의 **연간 소득 지급내역** 등을 **정확하게**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.
 -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,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(Y)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.
- Q11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조치할 방법은?
 - **근로자** 또는 **부양가족**의 **세적담당 부서 전 직원**이 신설되는 NTIS 화면 **DE9E**(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관리)에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"Y→N"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
 - "Y → N" 으로 정정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정상적으로 조회 되고 PDF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.
- Q12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?
 -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후 **부양가족**의 **자료를 합쳐**, **연말정산**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Q13
-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2개 이상의 PDF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?
- 더존 등 **상용 프로그램**은 대부분 **2개 이상**의 **PDF를 통합**하여 업로드 **가능**하나, 국가·지자체의 자체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.
 - 2개 이상의 **PDF 자료**를 합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양 가족 자료를 **직접 입력**해야 합니다.
- Q14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지?
 -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받아 내역 확인 후 **홈택스(모바일)**를 통해 **종합소득세 신고**하면 됩니다.

[기타]

- Q15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모두 제공되지 않나요?
 - **아닙니다**. **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** 자료는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합니다.
 - * (관련 법령) 소득세법 제59조의4【특별세액공제】제2항, 제5항
- Q16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함에도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?
 - **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** 대상이고, **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**는 12.31. 이전에 취업 등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**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** 가능하여 제공합니다.
 - * (관련 법령) 소득세법 제59조의4【특별세액공제】제2항, 제5항

01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?

○ 소득발생처·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이 확인 가능하며 아래 **홈택스(모바일)** 경로에 따라 **조회**하도록 **안내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〈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 경로〉

[간이 근로·사업·기타소득]

- · (홈택스) 나의 홈택스 > 소득·연말정산 > (일용·간이·용역) 본인 소득내역 확인
- · (모바일) 전체메뉴 > 지급명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 > (일용·간이·용역) 소득자료 제출 > (일용·간이·용역)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

[퇴직소득]

- · (홈택스) 나의 홈택스 > 소득·연말정산 > 지급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 내역
- · (모바일) My 홈택스 〉 연말정산간소화·지급명세서 〉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조회

[양도소득]

- ·(홈택스) 세금신고 > 전자신고 결과조회 > 세목을 "양도소득세"로 조회
- · (모바일) 전체메뉴 > 세금신고 > 신고서 조회/삭제/부속서류 > 전자신고 결과조회 > 세목을 "양도소득세"로 조회

O18

예를 들어 자녀가 하반기에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, 상반기에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?

○ 소득세법 제59조의4【특별세액공제】 제5항에 따라, **상반기**에 **부모**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.

019

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나요?

○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**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** 자료만 **제공**하고. 다른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제외한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 연말 Q20 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 했음에도, 제외된 가족이 기본공제자로 체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- 각 회사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자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 - 이 경우, **근로자**가 **직접** 해당 가족을 **기본공제대상자**에서 **제외**하면 됩니다. (상세한 내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)